

- 시행시기 : 2000년 11월부터 실시
- 청렴계약제 실시
- 시행일시 : 2001년 3월부터 시행
- 서약내용 : 입찰 및 공사계약 이행과정에서 공사업체와 발주기관이 서로 부당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

<서면답변>

서 면 답 변

- 홍장표 위원(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호 문교위원회 2003. 11. 24)

(질 의)

- 도내 급식시설이 협소하여 전학년 급식을 하지 못하는 231개 학교에 대하여 급식시설을 갖출 경우 시설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와 이를 전액 확보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시설비와 인건비 등의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고 식품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 직영급식과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급식 시설이 협소하여 전학년 급식을 실시하지 못하는 231개 학교 중 교내 부지 협소 등으로 급식시설 확장이 어려운 153개교를 제외한 78개 학교에 대하여 67억 4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금년도에 10개 학교에 16억 3천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한 바 있으며 2004년도 예산에 12개 학교 8억원을 계상하여 전학년 급식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건이 가능한 학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전학년 급식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직영급식과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문제는 현재 급식전담직원인 영양사의 정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등 전면 직영급식 추진이 곤란하단 말씀을 드리며 우리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식품비의 지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있을 경우에는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무상급식을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 위원님께서서는 경기도내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수의계약을 최소화 하겠다고 해놓고 2003년도의 수의계약 건수 및 금액이 2002년도와 큰 차이가 없어 시정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와 향후 국계약 등을 적용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우리 교육청에서는 계약방법 중 수의계약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고자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2000년 11월부터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 추진 대상 금액을 하향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그 이상 금액은 입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계약법에 장내 시설물의 하자책임 구분 곤란, 동일공사 혼잡 등에 대하여는 전차 또는 현 시공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은 수의계약에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조달청에서 마련한 경쟁 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 평가기준”을 적용시켜 위에 열거한 두 가지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일정 이상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이 결과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은 전자입찰과 청렴계약제, 수의계약 대상금액 하향 등 제도의 변화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제출한 수의계약 148건은 지역교육청을 포함한 것이며 2002년에 본청에서 발주한 건은 34건 153억입니다. 따라서 2003년도는 27건 124억원으로 2002년도 보다 감소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앞으로도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수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부조리로 발전되기 쉬운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	2002년도		2003년도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본 청	34	15,313,335	27	12,440,446
안양교육청	3	1,605,390	3	1,486,200
연천교육청	1	229,453	1	42,175
합 계	38	17,148,178	31	13,968,821

(질 의)

- 위원님께서서는 안산시 48학급 이상 13교의 과대·과밀 해소방안과 경수초와 시랑초를 추가 증축하여 학구를 분리하고 학급수를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안산시 관내의 48학급 이상 과대·과밀학교는 총 13개교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설립을 통하여 분리 추진 중인 학교는 배움초(본오초와 상록초 분리), 일동초(호동초 분리), 강서초(안산화정초와 와동초 분리)와 초당초 분리를 위해 본오아파트 인근 GB지역내 초·중학교 각 1개교씩 설립 추진 중이며
- 나머지 7개교는 지역적 특성상 학교부지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안산시와 지속적으로 부지확보 관계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며 경수초와 시랑초의 문제는, 동 지역은 월피동과 성포동의 안산신도시 1단계 지역으로써 공동 및 단독주택의 혼합 주거 형태를 이루고 있는 인구밀집 지역이며 당초 삼일초는 안산신도시계획에 맞추어 유입되는 학생수용을 위해 1990년 3월 개교한 학교이나 이후 주변에 다세대 개발이 급증하여 2000학년도에는 70학급 3,462명, 학급당 평균이 49.5명에 달하는 과대·과밀학교로 유지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 이러한 삼일초의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30학급 완성규모로 시랑초를 2002. 3월 개교한 학교로써 개교 당시에는 저학년(1~5학년)을 대상으로 학구 분리하여 14학급이었으나 현재에는 25학급이며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할 경우 완성규모인 30학급으로 예상되며

- 경수초는 인근 경일초의 과대·과밀(48학급, 급당평균 48명) 해소를 근본 목적으로 24학급 완성규모로 2000년 3월 개교한 학교이며 현재에는 과밀편성하였기 때문에 20학급이나 향후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시 24학급 완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경수초 및 시랑초 신설 분리로 인하여 2003년도 삼일초등학교는 58학급 2,469명, 학급당 학생수 45.1명으로 2000년도에 비하여 다소나마 과대·과밀이 해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아울러 경수초와 시랑초의 경우 증축여부를 검토 결과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과대·과밀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경영 위원(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호 문교위원회 2003. 11. 24)

(질 의)

- 경기도의 과대·과밀학교 기준과 과대·과밀 현황 및 해소대책은 무엇인지와 교육청별 과대·과밀학교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우리 도는 대단위 택지개발과 기존지역내 지속적인 공동주택 건축으로 학생수가 급증하고 있어 과밀학급을 해소하기에는 방대한 재정과 분리해소를 위한 부지확보 등 선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 우리 도의 과대학교 현황은 2003년 4월 현재 초등학교 49학급 이상 92교, 중·고등학교 37학급 이상 206교, 전체대비 17.1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밀학급 현황은 초·중·고 41명 이상 학급이 총수대비 21,765학급으로 48.4%를 차지하는 등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열악한 학생수용 실태를 개선키 위하여 연차적으로 교원수급 상황과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2010년까지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신설 302교, 교실증축 5,042실, 중학교의 경우 학교신설 224교, 교실증축 5,192실, 고등학교는 학교신설 242교, 교실증축 320실을 추진하여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30명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상 학교용지확보 및 교육재정여건의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계획의 완료시 교육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교육청별 과대·과밀 학교 현황은 교육청별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 의)

- 기존 몇 개의 학교에 설치하고 있는 빗물이용저장시설을 학교신설시 처음부터 적용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빗물이용시설은 2001. 3. 28일 개정된 수도법에 의하면 대상시설물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지붕면적이 2,400㎡ 이상이고 관람석 수가 1,400석 이상인 시설물로서 학교는 의무대상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물부족 해소 및 상수도요금 절감을 위하여 교육정책과 주관으로 2003년도에 시범사업으로 16개(초 8교, 중 7교, 고 1교)의 기존학교를 지정하여 빗물이용저장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청소 또는 정원용수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시범설치된 학교의 사용자의 의견을 조사한 후 초기시설비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질 의)

- 전기절약에 관한 내용으로 신설하는 학교에서부터 의무적으로 절전기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최근 각급학교 학교시설물의 현대화에 따라 냉·난방기 설치의 증가 및 전산장비 사용의 증가로 학교운영비에서 전기사용료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각급학교의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공사시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고효율기기 및 절전형기기 사용을 의무화하여 전기요금 절

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문서 : 시설81470-1178(2003. 04. 16)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등의 사용 확대 알림]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급학교의 절전기 설치 계획은 절전기 설치시 1개교당 초기투자비가 약 3,000만원 정도 예상되며 절전기의 효과에 대하여 공인기관(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등)에서 공식 인증 획득시 우선 신설학교에 적용하여 절감효과를 분석한 후 연차적으로 확대 적용토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 하수진 위원(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호 문교위원회 2003. 11. 24)

(질 의)

- 초빙교장제도로 인해 교감자격 취득자 미발령 사태에 대한 대책은?

(답 변)

- 초빙교장은 현직 교장의 10% 이내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현재 까지 초빙교장을 임용함에 있어서 중임 이후에 초빙교장으로 임용된 11명만이 교감승임 대기자의 승진발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초빙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권장사항으로 국가시책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초빙교장 임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임 이후의 초빙교장 명단을 서면자료로 보내드립니다.

- 박공진 위원(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호 문교위원회 2003. 11. 24)

(질 의)

- 위원님께서 안산, 시흥지역의 공단지역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공단지역인 화정천에 근접한 학교는 가산점 적용대상 학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 변)

- 교원의 승진가산점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가산점)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

하고 있으며 동 규정 중 제4항(선택가산점)제9호에 의거 명부작성권자가 교육과정운영, 생활지도 또는 특별활동지도 등과 관련된 교육활동에 대해 승진가산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2002년 1월부터 시화공단지역 내의 초·중·고 22개교를 근무경력가산점 대상학교로 지정하였고 2003년에는 반월공단 인근지역 15개 학교를 추가 지정하여 현재 안산시와 시흥시의 공단지역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대상학교는 초 등 20개교, 중등 17개교를 지정하여 공단지역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정천 주변의 학교는 현재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공단지역 가산점 부여 대상학교로 추가 지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 의)

- 농어촌 가산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도내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여성화되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초등학교의 남교사가 농어촌에 편중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 변)

- 농어촌 가산점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가산점제도에 의한 선택가산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선택가산점으로 읍·면 지역에 위치한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경력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승진에 관심있는 남자교사들이 가산점 부여학교를 선호하게 되어 농촌지역의 가산점 학교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앞으로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특성상 필요한 남자교사들이 편중되지 않도록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등급별 확대방안을 연구·검토하여 대도시나 중소도시의 여성화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 의)

- 초등학교의 학습준비물 운영에 있어 학생 1인당 10,000원씩 강제집행하는 것 보다는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재료 및 분량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것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다양성 교육에 저해된다고 하시며 재료의 선택과 분량을 학생 본인의 자율에 맡기는 것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 변)

- 현재 초등학교에서 학습준비물 예산은 학생 1인당 10,000원으로 탄력성 있게 학교예산에 반영하여 학생들의 학습준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양한 재료의 선택권을 학생에게 주는 방향에 대하여 공감하는 바 앞으로 학습준비물 구입시 학교별로 학생들의 의욕을 수렴하여 학습준비물을 구입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질 의)

- 교권 확립을 위한 도교육청의 장·단기적인 계획은?

(답 변)

-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사회안전망 개념을 교육부문에 도입하여 교원이 안심하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안전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세부사업을 말씀드리자면 교육활동 중 발생한 교원과 학부모(학생)간 분쟁을 학교 내에서 시의적절하게 자율적·교육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단위학교별로 2001년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 또한 교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전세자금 및 자녀결혼자금을 교원공제회를 통하여 대여시 이자의 50%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교원복지대여」를 시행하여 2002년도부터 720여명이 수혜받고 있는 등 교원의 안심하고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구축 및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종월 위원(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호 문교위원회 2003. 11. 24)

(질 의)

- 의왕시 소재 명지외국어고등학교 관련
 - 1개동 3층인 500평 규모의 교육용도시설에 대해 사기업인 모 주식회사에 임대료 1억 2천만원을 받고 임대를 하고 있으며 교육용재산보고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현재의 처리현황과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서면질의하셨습니다.

(답 변)

- 임대한 교육용시설은 1996. 6. 7 준공한 3층 교육관 건물로(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300,000천원을 용자받음) 교육용으로 활용되지 않아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주)송지아이디(대표이사 : 장광수)에게 2002. 5. 1부터 2002. 12.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보증금 120,000천원에 임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자로부터 재산을 명도받지 못하고 있어 재산을 명도받아 학교시설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학교법인 쌍정교육학원 처리계획
 - 의왕시로부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및 자진철거와 임차인의 재산 명도처리계획 제출(1차)
 - 임사차인이 이전지(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소재)의 증축공사 지연에 따라 재산 명도연기 및 확약서 제출(2차)
 - 명도기한 : 2003. 12. 5까지
- 기타 위법한 사항은 동 건물준공 후 증자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과 기재상환 완료 후 보고를 하지 않은 사항이 있어 관련자인 이사장, 법인담당자를 경고조치하고 관련자료를 첨부·보고하도록 하였고 처리결과는 제출한 바 있습니다.